

창원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10690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 1,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원

담당변호사 류종완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62,662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2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8,262,662원 및 그 중 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각 762,6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4. 6. 1.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상환기일 2004. 12. 31., 차용이자 매월 2,000,000원), 보증인으로 피고들의 부친인 망 F이 기재되어 있고, 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6. 30.부터 2005. 10. 4.까지 피고 C로부터 14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5. 4. 21. 법무법인 G 작성 증서 2015년 제217호 강제집행인낙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차용금액 150,000,000원, 이자 연 12%).

라. 망 F은 2007. 5.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H(2015. 6. 22. 사망),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마. 원고는 망 F 소유인 김해시 I 대 608㎡ 및 그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도정공장 24평에 관하여,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망 F의 보증채무는 위 공정증서 기재와 같이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인데, 상속인인 피고들은 상속분(1/4)에

따라 각 37,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F 부분의 도장은 망 F의 도장이 아니고, 피고 C가 위조한 것이라고 다룬다. 또는, 위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원고는 기초사실 마.항 기재와 같이 망 F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의 비용 3,050,650원으로 대위상속등기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분(1/4)에 따라 각 762,662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① 보증채무금에 대한 판단

보건대, 이 법원의 김해시 J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망 F의 도장이 망 F의 인감도장과 다른 점을 알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 F의 보증채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보증채무금 청구는 이유 없다.

② 대위상속등기비용에 대한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512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 11. 5.자 등기선례 제4-274호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그 권리 행사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에 의한 이익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채권자의 통상적·일반적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피고들을 대위하여 원고가 비용을 들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등기를 마치게 하였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비용으로 3,050,650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지분에 따라 각 762,662원(= 3,050,650원 × 1/4, 원 미만 버림)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2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